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3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금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9월 3일)

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2021. 12. 16. 공포 및 2022. 1. 13. 시행)에서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통장의 임명 사항을 규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통장의 임기, 통장 및 반장의 위·해촉 규정 삭제(현행 제4조 및 제5조 삭제)
- 명예반장 규정 삭제(현행 제6조 삭제)
- 통장 위촉을 통장 임명으로 변경(안 제7조의2)
- 위촉장 서식 삭제(현행 별지 서식 삭제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2022. 1.13. 시행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서 통장의 임명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,
- 현행 조례에서 통장의 임기 및 통·반장의 위·해촉 규정 및 명예반장 규정을 삭제함.
- 아울러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안 제7조2의 통장 ‘위촉’을 통장 ‘임명’으로 변경하는 것임.
-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가 개정 완료하였음.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제1항<sup>1)</sup>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,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--

1)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